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22
----------	-------

발의연월일 : 2026. 9. 2.

발 의 자 : 서영석 · 윤준병 · 이해식
박용갑 · 전종덕 · 임호선
노종면 · 윤후덕 · 한정애
소병훈 · 진성준 · 윤종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에 종사할 때에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저장시설의 출입 및 점검과 점검기록을 작성 및 비치하도록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표준품, 마약류 원료의약품, 학술연구 목적 등의 마약류도 취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하여서만 준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의 물품범위를 의료용 마약류에 한정하지 않고 마약류 전체로 넓혀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막고, 의료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마약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의료용 마약류”를 “마약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 무) ① · ② (생 략) ③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u>의료용 마약류</u> 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 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마약류</u> ----- ----- ----- -----.